

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·조사
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남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1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수수료 적용 근거 규정 정비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수수료 적용 기준이 되는 관련 규정을 정비 함(안 제4조제2항)
-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 함(안 제4조제4항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함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학)

가. 제출배경

-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자정부법」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
- 띄어쓰기, 용어정비 등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4조제2항은 수수료 적용 기준이 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함
 - 현행 조례에서 시료의 분석 수수료는 「국립수산과학원 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」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하되, 항생물질 시료의 분석 수수료는 「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 - 개정된 「국립수산과학원 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」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항생물질 시료 분석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어 적용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- 안 제4조제4항은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
 - 이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4)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5)에

4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5)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따라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본 개정안은 타당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고, 수수료 적용 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